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중앙소방학교 교칙

◇ 제 · 개정 이유

신속하고 안전한 현장대응을 위해 신임교육과정의 성적기준향상, 현장 실무과목 과락, 졸업사정절차를 도입하여 졸업기준을 강화하고, 퇴교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◇ 주요내용

- 가. 시범강의 및 예행강의의 내실화를 위해 강의 대상을 교수요원에서 실제 강의 또는 훈련을 실시하는 교직원으로 변경(안 제19조)
- 나. 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」에서 교수요원의 명칭·역할 등을 정비 함으로서 지도교수요원을 생활지도교수로 변경(안 제25조의2, 제26조, 제31조)
- 다. 교육훈련기관별로 기준이 상이한 당연(직권)퇴교의 기준을 명확히 함 (안 제43조, 제44조)
- 라. 신임교육과정은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, 학교장이 지정하는 현장실무 과목 등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이 별도의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한 경우 신임교육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등 졸업요건을 강화함(안 제48조, 제48조의2·3·4·5)